

# 이라크의 商標制度

孫 海 雲  
< 辨 理 士 >

## ① 出願對象

이라크에서 누구든지 自己의 生産, 製造, 加工 또는 選擇에 關係되는 商品으로서 自己가 現在 販賣하고 있거나 앞으로 販賣하려는 것과 他商品을 區別할 目的으로 그 商品에 關係 商標를 專用할 權利를 갖는것을 希望할 때는 이라크商標 및 商業表示法의 規定에 따라 그 商標의 登錄出願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다음 各號의 1에 揭記하는 事項은 商標로서 登錄될 수 없다.

(1) 特別顯著한 性質을 갖고있지 않는 商標, 商品의 種類, 品質, 數量, 그리고 生産場所의 區別이나 表示를 하기 위하여 사용된 商標 또는 現行의 이라크語로서 이들 事項을 表示하는 商標

(2) 公共秩序와 美風良俗에 違反하는 商標, 表現 또는 圖案

(3) 이라크, 外國 또는 國際聯合이나 그 機關의 長, 紋章, 勳章 및 記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

(4) 專門的 宗教的 意義를 갖는 記號와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

(5) 赤十字 또는 제네바十字 및 赤星의 記章과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

(6) 書面으로 承諾을 받지 않은 他人의 名稱, 稱號, 肖像 또는 記章

(7) 公衆을 欺瞞하거나 또는 公衆에게 商品의 虛偽表示를 眞實한 것처럼 誤認시킬 憂慮가 있는 圖形, 文字 및 言語

(8) 公衆에게 商品의 出所 및 그 表示에 關係되는 虛偽宣傳을 받을 憂慮가 있는 商標, 그리고 欺瞞的, 偽造的, 또는 詐偽의인 商號를 包含한 商標

(9) 登錄出願人이 適法的으로 갖지 않은 名譽稱號의 宣言 또는 商標使用者가 書面으로 證據를 갖고 있지 않은 特別恩惠를 特權적으로 賦與했다는 것을 誤信할 憂慮가 있는 陳述을 包含한 宣言

(10) 同一한 商品에 關係되는 他人商標에 類似한 商標, 다만 誤認 또는 混同을 일으킬 憂慮가 있을 때에 限함

(11) 商標使用으로 生産國 또는 出所國에 關係하여 混同을 일으킬 憂慮가 있는 地理的 名稱

## ② 登錄節次

商標의 登錄出願은 商標法에 의한 規則에서 定하는 樣式 및 條件에 따라 登錄官에게 하게 되며 規則에서 揭記하는 商品類別에 의하여 하나에서 둘以上의 商品 또는 둘以上의 類에 關係하여 登錄할 수가 있다.

한편 登錄官은 둘以上의 者가 同一類에 屬하는 商品에 關係하여 同一 또는 類似한 商標登錄을 同時에 出願할 경우에는 그 競合하는 出願人은 누구나 他者의 利盆을 위하여 自己의 權利를 拋棄한다는 要旨의 證明書 또는 法院의 確定判決을 提出할 때까지 모든 出願에 關係되는 節次를 中止하게 된다.

또한 登錄官은 商標使用의 樣態, 場所, 其他의 事項을 記述, 定義, 明確化하는 등의 相當한 理由에 根據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制限 또는 修正을 其他의 既登錄商標와의 混同을 防止하는데 充分한 方法으로 出願人에게 命할 수가 있다.

다음 登錄官은 出願의 拒絕 또는 條件을 불허서 認容할 경우에는 그 決定의 理由 및 그 理由에 關聯하는 事實을 開示한 書面에 다 그 要旨을 出願人에 通知한다.

그러나 出願人이 登錄官이 命한 制限에 따라 30日以內에 再次 出願하는 것을 懈怠하게 되면 出願을 拋棄한

것으로 看做하게 된다.

이와같은 登錄官의 決定에 대해서 出願인은 法院에 不服申請을 할 수가 있고 이 不服申請은 登錄官의 登錄決定通知日로부터 30日以内に 해야하는 것이다.

한편 登錄官이 出願認容을 하게 되면 그 要旨의 公告를 公報에다 連續 3회에 걸쳐 掲載한다.

### ③ 異議申請 및 登錄

이와같은 登錄公告에 대해 利害關係인은 前後의 公告掲載日로부터 90日以内に 書面으로 商標登錄에 관한 異議申請을 할 수가 있다.

異議申請이 接受되면 登錄官은 商標出願인에게 異議申請의 書副本을 發送하고 通知를 받은 出願인은 30日以内に 答辯書를 提出해야하는데 이 期間以内に 答辯書의 提出이 없는 경우에 역시 出願을 拋棄한 것으로 보게 된다.

異議申請의 決定前에 登錄官은 當事者의 一方 또는 雙方을 審問할 수가 있고 이러한 節次를 거쳐 登錄出願을 認容또는 拒絶하는 決定을 하게 된다.

이때 出願認容의 경우에는 必要하다고 보는 制限을 命할 수도 있으며 異議에 理由없다는 認定이 되면 登錄査定을 하게 된다.

登錄은 出願일을 遡해서 効力이 發生되며 登錄官은 商標登錄을 하는데 出願인이 懈怠하여 6個月以内に 그 節次를 完了하지 않은 경우 期間內的 登錄을 書面으로 要求하고 그래도 節次를 밟지 않으면 出願의 拋棄로 處理한다.

### ④ 商標權의 移轉

商標權은 指定商品과 關聯이 있는 營業과 함께 移轉할 수는 있으나 擔保로 提供한다든가 押留할 수는 없다.

商標權의 移轉에 있어서는 別途의 合意가 없는 限 營業과 함께 해야 하는데 營業이 商標와 分離하여 讓渡되는 경우라해도 讓渡人은 別途의 合意가 없는 限 商標登錄에 관계되는 商品의 製造 및 去來를 繼續할 수가 있다.

한편 商標權者가 어떤 理由로 營業을 中止하고 그 結果 둘 이상의 者에 그 商標權을 移轉하게 되는 경우 이들 營業의 承繼人이 商標權의 分割所有를 希望할 때 登錄官은 現在 營業을 하고 있다는 要旨를 證明하는 者에게 自己가 相當하다고 認定하는 制限, 條件, 變更등을 붙여서 移轉을 命할 수가 있다.

商標의 移轉, 擔保 및 押留는 그 要旨의 公告 및 登錄後가 아니면 第3者에 對抗할 수가 없다.

### ⑤ 更新 및 取消

商標權의 存續期間은 15年이며 다만 이 기간은 所定의 料金を 納入하여 期間滿了的 年度末까지의 申請에 根據하여 15年씩 每年 更新할 수가 있다.

또한 商標權이 更新登錄料를 納入하지 않아 原簿에서 抹消되었더라도 그 抹消日로부터 1年間은 他人에 의한 商標登錄出願을 위해서는 前商標權者의 名義로서 原簿에 登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登錄官이 그 商標登錄의 抹消前 2年間에 그 商標의 現實의 使用이 없거나 抹消된 商標의 從前使用에도 不拘하고 登錄出願의 目的이 되는 商標의 사용으로 誤認混同을 일으킬 憂慮가 없는것에 滿足하는 경우는 여기에 限하지 않는다.

利害關係인은 商標登錄이 不適法이거나 商標權者가 그 商標를 使用할 意圖가 없고 그 商標가 登錄日로부터 2年間 使用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登錄商標의 取消을 法院에 請求할 수가 있다.

이경우에 그 商標의 不使用이 商標權者의 歸責事由가 아닌 特別한 事情 또는 法定理由가 있으면 取消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商標權者以外的 者는 取消日로부터 적어도 1年을 經過할 때까지는 取消에 관계되는 登錄을 할 수가 없다.

商標의 再登錄 및 更新은 規則에 따라 公告하고 登錄官이나 利害關係인은 違法으로 登錄된 商標의 取消를 法院에 請求할 수가 있다.

### ⑥ 登錄原簿

特許廳에 原簿를 備置하고 登錄官이 이를 管理하며 그 原簿에는 商標, 商標權者의 姓名, 住所, 居住地, 指定商品의 表示, 商標權에 관계되는 變更, 移轉, 讓渡 및 拋棄 事項 등이 記載된다.

또한 이 原簿는 公衆의 閱覽에 부쳐서 누구든지 所定의 料金丹 支拂하면 原簿에 記載된 認定謄本을 取得할 수가 있다.

移轉, 其他 適法한 原因으로 商標權을 取得한 者는 登錄官에게 自己의 名義로 商標登錄을 해 주도록 申請할 수가 있고 登錄官은 그 者의 名義로 商標 및 商標權移轉의 原因을 原簿에 登錄한다. —14面に 계속—

## ⑨ 結 論

以上에서 檢討한바를 綜合하여 보면

① SEARCH-FILE은 그 機關의 特性에 맞게 1次式 혹은 2次式을 選擇하여야하고

② SEARCH達成目標은 最少限 80%以上이 되어야 하겠으며

③ 蒐集資料數는 全部野를 COVER하려고 할때는 最少限 年間特許文獻의 1次公開分 約 37萬件以上을 蒐集할 것이며 어떤 特定の 分野만을 蒐集하려고 할 때는 그 分野에 限하여 資料를 蒐集整理하면 되고

④ 蒐集資料範圍는 言語를 고려하여 美國特許, 日本特許를 優先시키고 나머지 歐州特許를 收集함이 좋을 것으로 思料된다.

⑤ 蒐集國家는 主로 美國과 日本을 優先하여 擇하고 여기에 歐州의 重要한 2個國程度면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나머지 國家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남게 되나 世界的으로 認定이 되는 重要한 特許는 美國이나 日本 그리고 歐州의 重要國에도 出願하는 것이 一般의 傾向이므로 이를 重要한 國家만 蒐集하면 그의 大部分의 特許技術은 蒐集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以上の 諸條件이 決定되었으면 다음은 이 原則에 의하여 資料를 蒐集하고 이들 資料를 分類別로 整理한다면 SEARCH-FILE이 完成되는 것이다. 여기서 分類를 어떤 分類를 擇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機關에서 使用에 便利한 分類를 擇하여 이에 따라 分類를 하면 될 것이다. 國家에 따라 獨自의인 分類가 있으며, 이를 世界的으로 統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國際特許分類(IPC)도 있으므로 여러가지를 參考하여 그 機關에 알맞은 分類를 擇하여 그 分類表에 따라 資料를 整備分類하면 될 것이다. (完)

—11面에서 계속—

또한 登錄官은 原簿에 記載되어 있는 錯誤, 또는 漏落이나 更正申請이 있으면 檢討하여 適當하다고 認定할 때는 原符記載를 更正할 수가 있고 그리고 商標登錄, 登錄商標의 讓渡 또는 移轉에 관한 詐僞事實이 있으면 更正命수를 要求하기 위한 그 事件을 法院에 移送한다.

한편 原簿에 記載된 制限 또는 條件을 留保하여 商標權者로서의 適法한 登錄에 관계되는 商品 또는 그 商品에 관련하여 當該商標를 專用하는 權利를 賦與하고 있다.

## ⑦ 商業表示

이라크에서의 特色있는 商標制度의 하나가 商業表示制度이며 다음에 揭記한 事項에 直接 또는 間接으로 關聯하는 表示 또는 그 細目을 商業表示로 한다.

- (1) 商品의 性質, 數量, 尺度, 重量 및 容積
- (2) 製造國
- (3) 製造 또는 生産方法
- (4) 構成物의 要素
- (5) 製造者 또는 生産者의 姓名, 名稱 및 表示
- (6) 特許權, 商工業上의 獨占權 또는 特權
- (7) 商品의 周知名稱 또는 形態

商業表示는 商品, 住所, 營業所 또는 倉庫, 包裝, 送狀, 其他 廣告나 販賣 및 陳列用의 在庫品으로 사용 되는 경우는 事實과 一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販賣者의 姓名, 名稱, 住所는 輸入品에 關係

그 製造地(原產地)를 明確한 字體로 된 表示를 添附하지 않으면 그 物品에 表示할 수가 없다.

또한 어떤 商品의 製造地 또는 生産地에 住所나 居住地를 갖고 있는 者로서 다른 地域으로부터 輸入하는 類似商品의 去來를 하는 者는 그 商品의 出所에 關하여 公衆을 欺瞞할 수 있는 方法으로 自己商標를 그 類似輸入品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 ⑧ 罰 則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3年以下の 懲役 또는 200치날以下の 罰金에 處하고 그 刑은 情狀에 의하여 이것을 併科할 수 있게 된다.

- (1) 商標表示의 規定에 違反한 者
- (2) 商標法上에 登錄된 商標를 公衆에게 欺瞞하는 方法으로 偽造 또는 模造한 者와 이와같은 商標를 사용한 者
- (3) 故意的으로 自己製品에 他人의 商標를 附着한 者
- (4) 偽造 또는 模造商標를 不法으로 商品에 附着한 것을 알면서도 그 商品을 故意로 販賣하거나 販賣토록 한 者 등이다.

한편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以下の 懲役 또는 100치날以下の 罰金에 處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 (1) 不登錄事由의 商標를 使用한 者
- (2) 登錄商標를 誤認하도록 事實과 다르게 自己商標나 去來上의 廣告등에 사용한 者 등이다.